



북한 정부

## 북한의 외국인 기술투자 제도

### 1. 제도의 도입과정

북한은 오랫동안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 널리 도입,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므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어느 한 기업소, 기관,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영법 실시 등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기술·자본의 유치 필요성에 따라 1986년 11월 1일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발효되면서 북한에도 산업재산권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및 북한 주민도 특허등록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만 특허등록을 하고 있다.<sup>1)</sup> 북한 주민의 경우는 특허등록을 받는다 해도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으므로, 보상 등 개인적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발명권을 인정하는 발명자증을 선호하고 있다.<sup>2)</sup>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라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 설치 등 적극적인 서방자본 유치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에도 착수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이 제정되었고, '합영법'이 현실에 맞

- 1)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2조에 따르면, 특허제도에 관한 북한의 법률제도는 북한의 기관, 기업, 사회협동단체,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동포, 외국의 기관, 기업, 사회협동체 및 국민에게도 적용됨(신웅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1998, p.284~285, 289).
- 2) 발명권은 특허권과 달리 독점적인 이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권리로서 "발명자는 현행 법규법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명권과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발명에 대한 이용권은 국가가 소유"(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9조)하는 제도임. 특허를 받은 권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으며, 타 기관,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11조, 동 시행세칙 제11조). 발명권자에게는 발명증서와 발명메달 및 발명자증이 주어지고, 발명상금이 주어짐. 발명상금은 발명제안이 받아들여 정상화된 후 첫 1년 동안 얻어진 이익금의 5~10%의 범위 내에서 발명총국이 결정함(민병오,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제도비교 및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2002, p.41~42).

게 개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외국기술도입규정'(정무원 결정 제45호, 1996. 8. 11 제정)을 마련하였다.

## 2. 외국인 기술 투자제도

북한 당국도 산업기술, 경영의 know-how 등의 재산적 가치는 외국인투자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sup>3)</sup> 도입 가능한 외국 기술로는 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설비와 제품의 생산기술, ② 특허권으로 취득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기술비결(경영의 know-how), ③ 과학기술 등을 예시하고 있다(외국기술도입규정 제2조).

북한에 대한 외국의 기술투자는 발명·기술<sup>4)</sup>을 출자하는 것과 발명·기술을 제공하여 북한측이 이를 사용하려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특허나 경영의 know-how 또는 상품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의 주식 또는 자본 등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즉, 기술제공자는 합영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그에 관한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다. 후자는 특허나 노하우 또는 상표의 소유자가 현재 소유하는 특허나 노하우 또는 상표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특허 등

의 사용을 허가하고 고정기술료를 받는 경우이다.

북한 합영회사의 출자지분으로 특허·기술을 제공하거나 북한측과 기술 도입계약을 통하여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그 특허·기술의 지배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북한의 특허 관련업무는 내각 과학원 산하 발명총국에서 관할하며, 특히 신청의 접수, 심사, 등록 등의 집행업무는 발명심의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실제로 북한 내에서 특허를 신청할 경우는 평양특허상표대리소, 묘향산변리사들, OUN 특허사무소 등 8개 대리소를 통하여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sup>5)</sup> 출원발명의 심사 및 최종 승인 여부는 출원일로부터 15개월 내에 결정되며, 심의 중 필요한 자료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발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특허는 국가발명등록부에 등재되며,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발명총국에 발명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15년이다.

한편, 북한측과 기술도입계약을 통하여 특허·기술을 제공할 경우는 북한 내 특허 취득과 별도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의 기술도입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기술 도입 관련 법규로는 외국

3) "외국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외국인투자법 제12조)

4) 북한에서는 기술내용을 수준에 따라 큰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갖는 과학기술상의 성과가 있는 기술을 "발명"이라 하고, 종래의 기술을 강화·개량하여 보다 나은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상의 성과가 있는 기술을 "기술혁신"이라 함(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5) 민병오, "남·북한 산업체재산권의 제도비교 및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2002.

기술도입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외국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먼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당사자의 주소, 계약대상명과 내용, 도입기술의 도입목표와 기간, 실현방법과 단계, 기술자료의 제공범위와 비밀보장조건, 기술자 교류와 기능공 양성 방법, 기계, 설비, 원료, 자재, 부문품의 납입조건, 검사기준, 상표조건, 기술사용비와 그 계산·지불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외국기술도입규정 제7조).

북한은 외국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철저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기술 도입자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외국기술 도입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외국기술도입규정 제10조, 제11조). 또한, 기술도입계약을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문제점 및 해결과제

#### 북한의 외국기술 도입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이 북한에 기술투자를 할 경우 북한 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북한측과 합영회사를 설립하면서 특허·기술을 양도형식으로 출자한 경우는 당해 합영회사가 북한 내 특허 출원자가 되므로, 북한 법인인 합영회사는 북한 법률에 따라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사용권을 출자하거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격으로 북한 내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대한민국 국적의 특허출원을 받아줄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은 1980년 6월 1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sup>6)</sup>과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바 있다. 동 조약에 따르면 파리협약 가입국간에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 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등록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국가자격 불인정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남북 상호간 출원·등록이 전무한 상태이다.<sup>7)8)</sup>

다음으로, 특허자격이 없는 경영 know-how 등의 외국기술 도입 계약시 북한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 심의과정에서 노하우의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비밀 보장은

- 6)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남한과 북한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조약임. 그 내용은 특허 등의 출원이나 등록에 있어 회원국의 국민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한 나라에 출원을 한 후 일정기간(특허·실용신안은 1년, 의장·상표는 6개월) 내에 타 회원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최초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우선권 주장의 원칙, 제3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각국마다 출원을 하여 권리를 얻어야 하고, 여러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를 병행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특허독립의 원칙 등으로 요약됨(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상사·경제, 노동관계법-, 1997, p.367).
- 7) 민병오,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제도비교 및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2002.
- 8)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파리협약 가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 국적인의 중국 내 특허 및 상표 출원을 허용하지 않다가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1989년부터 우리 국적의 특허 및 상표 출원을 받아주고 있음(정지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1999).

---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9)</sup>

북한에 대한 외국인 기술투자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주의 관점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력정신을 살려 일방의 출원·등록의 권리를 상대지

역에서도 인정해 주는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측에서도 외국기술에 대한 비밀보장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정 만】

---

9) 이강,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1996.